

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우16304 /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(송죽동) 4층 / 전화(031)243-5221,2 / 팩스(031)251-9770 / www.kgta.or.kr

문서번호 경기화협 제411호

시행일자 2021. 6. 2.

수 신 각회원

(경유)

참 조

선 결		지시	
접 수	일자 시간	결 재 · 공 람	
	번호		
처리과			
담당자			

제 목 ‘20년 운수종사자 교육 미 이수자 추가 교육 참여 독려 협조 요청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교연 21-85(2021.5.25.)호와 관련입니다.

3.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2020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나, 현재까지도 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인 바,

4. 각 회원님께서서는 「2020년 운수종사자 3회차(최종) 추가 온라인 보수교육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어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경기도교통연수원☎(031)251-6191~3

(전화예약불가,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만 가능)

※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예약 방법

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→ 운수종사자교육 → 2020년도 미수료자 교육예약 바로가기

붙임 : 1. 온라인 보수교육 추진현황 및 예약 현황 1부.

2. 운수종사자(보수)교육 관련 행정처분 1부. 끝.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이 사 장 고 달



[붙임1] 온라인 보수교육 추진현황

☐ 온라인 보수교육 추진현황

(2021.5.25.기준, 단위:명)

구 분	계획	실적	잔여인원	수료율
총 계	16,707	4,989	11,718	29.9%
여 객	5,428	1,350	4,078	24.9%
화 물	11,279	3,639	7,640	32.3%

☐ 교육장소 : 온라인(E-learning) 교육('20년 위탁운영 계속 사용)

※ 온라인 교육장 : <https://kytti.hunet.co.kr>

☐ 교육과목 : 총8과목/32차시(여객:4과목/16차시, 화물:4과목/16차시)

☐ 교육시간 : 업종별 4시간(3일간 수강 가능)

☐ 잔여기수 : 총2회(여객:1회, 화물:1회)

☐ 교육일자 : 2021년 6월

구분 업종	1기(4/11일~4/13일)-추진완료			2기(5/16일~5/18일)-추진완료			3기(6/17일~6/19일)		
	예약 마감일	교육 시작일	교육 종료일	예약 마감일	교육 시작일	교육 종료일	예약 마감일	교육 시작일	교육 종료일
여객	4/6	4/11	4/13	5/14	5/16	5/18	6/15	6/17	6/19
화물	4/9	4/11	4/13	5/14	5/16	5/18	6/15	6/17	6/19

※ 교육 추진 후 교육 참여자 증가에 따라 추가 교육 편성 될 수 있음.

※ 유튜브 : 경기도교통연수원 채널 추가(온라인 교육 참여방법) 참조

- 모바일 :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Co9lZpnNutI>

- 컴퓨터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R_AoUIWUwPo

운수종사자(보수)교육 관련 행정처분

○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[별표 1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(제5조제1항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 [시행일: 2019. 1. 1.] 제2호의 제10호서목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처 분 기 준
10.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.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,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7호	○사업 일부정지(10일)

[별표 2]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(제7조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 [시행일: 2019. 1. 1.] 제2호의 제3호머목, 제2호의 제17호차목, 제2호 비고 제1호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과 징 금 의 금 액
3.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머.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,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7호	30만원

※ 비고

- 위 표 제3호머목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.
(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×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)

[별표 5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과 태 료 금 액
아. 운수사업자가 법 제11조(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,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제5호	50만원
보.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	50만원